

#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연금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강북구”라 한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출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강북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강북구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북구가 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강북구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용보증”이라 함은 강북구 내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증사고”라 함은 강북구가 추천하여 재단이 신용보증한 건 중에서 보증부 대출금의 원리금 연체, 당좌부도,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 등 재단의 제 규정에 의해 사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보증사고정상화”라 함은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 ④ “보증사고순증액”이라 함은 보증사고발생금액에서 보증사고정상화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⑤ “정상상환금액”이라 함은 보증부 대출건이 보증사고사유의 발생 없이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
- ⑥ “보증추천”이라 함은 보증 신청한 업체 중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강북구가 재단에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납부)** ① 강북구에서는 그간 재단에 신용보증재원으로 출연한 3억원 이외에 별도로 1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며, 이후에도 추가 출연하는 경우에 이 협약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 ② 강북구는 출연금 납부를 재단이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한 후 재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계좌명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좌번호	6*****-013 (기업은행)

③ 재단은 강북구의 출연금 납부내용을 확인한 후 출연금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 강북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보증추천총액한도)** ①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는 강북구 출연금의 10배 수 범위 내로 한다.

② 강북구가 보증추천 할 수 있는 보증한도여유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text{보증한도여유액} = \text{출연금의 10배수금액} - \text{보증실행금액} - \text{보증사고순증액의 2배수금액} + \text{정상상환금액}$$

③ 강북구의 추천으로 재단이 신규보증을 지원할 때에는 강북구 내에 소재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장이전 등으로 강북구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의 총액한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④ 강북구와 재단은 제1항의 총액한도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한다.

**제5조(보증추천 및 심사우대)** ① 강북구는 강북구 소재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재단에 <별첨>의 “신용보증추천서”로 보증 추천 통지하면, 재단은 강북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업무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강북구의 보증추천은 신규보증에 한하고, 기추천한 보증에 대한 기한연장 등의 경우에는 추가 추천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강북구는 보증신청한 업체 중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추천하기로 하고, 재단은 강북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에 있어 우대하기로 한다.

③ 강북구 추천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 규정에 의하기로 한다. 이때 강북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그 요청사항에 대해 강북구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업무협조)** ① 강북구는 보증추천한 기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제공 요청하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② 재단은 강북구가 추천보증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북구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변경)**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북구와 재단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재단은 출연금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이 이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2. 이 협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이 협약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
4. 강북구와 재단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정하여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북구와 재단의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 협약의 증거로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강북구와 재단이 협약체결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박 검 수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 진 섭 (인)

<별첨>

## 특별신용보증추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추천번호 :

추천대상기업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핸드폰번호			
	업종			
보증추천금액				
특기사항 (추천사유 등)				

위의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추천합니다.

20 . . . .

추천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인)

담당자 ○○○ (☎ ××××-××××)